

# 지방세 제증명 발급신청서

본인신청  
 대리신청 (앞쪽)

\* 해당 에 √표를 하시고, 위임하실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위임하지 아니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X 표를 해 주십시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증 명 발 급 신 청	증명의 종류						통	
	<input type="checkbox"/> 지방세 납세증명서	<input type="checkbox"/> 대금수령	대금지급자 :					
		<input type="checkbox"/> 해외이주	이주번호 :		신고일 :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신탁등기	신탁부동산 표시 :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목적						
	<input type="checkbox"/>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당세목 : (과세대상 :					)	과세연도 ~	
	<input type="checkbox"/> 지방세 납부확인서(해당세목 : (과세대상					)	납부연도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용도	<input type="checkbox"/> 입찰·계약 <input type="checkbox"/> 관공서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발급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 <input type="checkbox"/> 학교 <input type="checkbox"/> 기타( )							
공개 여부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일부공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신청인 : _____(서명 또는 인)                 </div>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b>위 임 장</b>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 납세자는 아래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 민원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납세자 : _____(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 : _____(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와 관계	전화번호(휴대폰)		
<b>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b>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증명발급 불가능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 (5년)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input type="checkbox"/>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납세자 본인(서명 또는 인) : _____ 위임받은 사람(서명 또는 인) : _____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청시 제출해 주셔야 할 서류 : 뒷면 참조

## 신청시 제출해 주셔야 할 서류

### 1. 본인 신청시

가. 다음과 같이 본인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① 개인: 본인 신분증.
-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 ③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과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다. 피상속인의 민원증명을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피상속인)이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 (단, 전산입력시 신청인과 수령인 란에 상속인의 인적사항 기재)

### 2. 대리인 신청시

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로 위임사실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① 위임장
- ②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위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그 외의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사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

나. 인감증명서(사본 포함)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 납세관리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나. 다음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에 갈음합니다.

- ①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예)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선임되며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대리권 수여 심판을 통하여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결정문 등을 보고 대리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 ② 신청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발급 신청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신청시에는 그 자격을 증빙하여 신청

※ 지방세 납세증명서(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신청시 :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1부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 생략